

5. 檢討意見

忠清北道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條例 改正 條例案을 검토한바,

가. 의료보호법 (법률 제4353호, 91. 3. 8) 및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13461호, 91. 9. 6)의 改正으로 관련 條例를 개정함에 있어,

나. 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기능 조정으로 시·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의료보호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진료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業務를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條例를 改正하는 것으로 본 改正 條例案 타당하다고 사료함.

6. 改正條例案 : 별첨

7. 根據法令 : 별첨

8. 其他參考資料 : 별첨

.....
다음은 지방공사 忠清北道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忠清北道 충주의료원 설치 條例中 改正 條例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地方公社忠清北道濟州醫院및地方公社忠清北道忠州醫院設置條例案中改正條例案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년 11월 13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11월 13일

3. 제안사유

주거환경 변화로 교통사고 및 산재사고 급증으로 영안실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유족들의 장의 편의 도모와 장의비용 輕減 및 청결한 분위기 造成을 위하여 淸州醫療院 및 忠州醫療院의 사업활동 범위 (장의사업)를 추가함.

4. 주요골자

지방공사 忠淸北道 淸州醫療院 및 忠州醫療院에서 주민의 장의편의 증진을 위한 장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5. 검토의견

지방공사 忠淸北道 淸州醫療院 및 忠州醫療院 설치 조례중 改正 조례안을 검토한바,

가. 산업화에 따른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고의 急増으로 지방공사 청주의료원과 지방공사충주의료원의 영안실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인 바,
나. 一般 장의업자들의 다소 반발은 예상되나, 유족들의 장의편의 도모와 費用 節減은 물론 醫療院의 자체 收入 증대와 청결한 장의실을 유지하는 등 장의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改正條例案 : 별첨

7. 改正根據 : 별첨

8. 其他參考資料 : 별첨